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변동한 77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랐

- 기 간 : 2026년 9월 1일 ~ 9월 22일
- 장 소 :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2026.1.1. ~ 6.30. 기간내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776필지)

○ 의견제출

- 기 간 : 2026년 9월 1일 ~ 9월 22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7월1일기준 776필지로 한정)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
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
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2026. 8. 31.

무 주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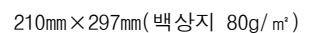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내용	열람지가 원/m²		의견가격 원/m²	
	의견제출사유			

이
이
이

무 주 군 수 귀하

처리절차



의견제출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땅값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60만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26. 1. 1 기준으로 2인(지가변동이 작은 경우 등은 1인 가능)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조사·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별지 제3호)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